「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」 주요 개정내용

구분	현행	개선	쪽
데이터	2. 가명처리 원칙	2. 가명처리 원칙	
	(중간생략)	(중간생략)	
	● 「데이터 심의위원회」(이하 "심의위원회")의	● 「데이터 심의위원회」(이하 "심의위원회")의	
	설치 • 운영	설치 · 운영	
	- (구성)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	- (구성) 다음과 같은 위원을 포함하여 5인	
	하되,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	이상으로 구성해야 함.	
	(이하 외부위원")이 과반수를 차지하고,	▶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경험이	
	다음과 같은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	풍부한 자	
	▶ 정보 주체를 대변하는 자 1인 이상 (정	▶ 개인정보보호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	
	보주체예시: 환자, 앱 사용자 등)	갖춘 자(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)	
심의 위원회	▶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1인 이상	▶ 정보주체 또는 그 관점에서 이익을 대변할	
	▶ 정보보호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 1인 이상	수 있는 자(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)	7
설치 .	(중간생략)	(중간생략)	
운영	- (기록보존) 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은 데이터	- (기록보존) 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에 대하여	
正台	활용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	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·보관하는 것을	
	속기록 또는 녹취파일 등의 형태로 보관	권장함	
	하여 정보 주체가 필요시에 열람할 수		
	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		
	- (정보공개) 개인정보처리자는 심의위원회의	- (정보공개) 개인정보처리자는 심의위원회의	
	운영에 관한 사항'을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	운영에 관한 사항*을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	
	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권장함	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권장함	
	* 운영규정, 위원 명단, 위원 약력, 심의	* 운영규정, 심의 안건 목록, 심의 결과 등	
	안건 목록, 심의 결과 등		
	3.데이터 유형별 가명처리 방법	④ (영상정보) 다음 중 필요한 조치를 이행	
	3) 속성값 : 데이터 속성별 처리방법	하여야 함	
	(중간생략)	- 영상정보 상에 환자번호·성명·생년월일 등	
	④ (체외를 촬영한 영상정보) 다음 각 조치를		
	모두 이행하여야 함	전부를 대체	
	(중간생략)	- DICOM 헤더 등 메타데이터 상의 개인정보	
	⑤ (체내를 촬영한 영상정보) 다음 각 조치를	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	
데이터	모두 이행하여야 함	- 영상정보 이미지 상의 특정 개인을 식별	
유형별	(중간생략)	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, 문신, 보형물	
가명	⑥ (단층촬영·3D이미지 정보) 다음 각 조치를	등은 삭제 또는 모자이크, 표면 가장자리	12
처리 방법	모두 이행하여야 함	삭제 등의 방법으로 처리'	
	(중간생략) 	* 신체의 내외부를 함께 촬영한 단층촬영,	
		3차원 이미지(MRI, CT, 초음파 등)의 경우	
		3차원 재건 등의 기술을 활용하면 신체 이미지 복구 가능성이 존재하여 식별	
		의 의 기계 국구 가능성이 문제하여 국물 기험 존재	
		- 가염 근세 - 가명처리에 소요되는 시간, 비용 및 위험도,	
		-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식별성이 존재	
		하는 특이정보를 포함한 정보는 제외하거나	
		정보주체 동의를 받아 처리할 것을 권장	

구분	현행	개선	쪽
서식 추가	<신설>	○ 붙임5.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서식 예시 -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(위원용) -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종합결과서	53
FAQ 추가	<신설>	○ 붙임6. FAQ - 23.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인간대상 연구를 하고자 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과의 관계는? - 24.의료기관에서 연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데이터를 수집하여 과학적 연구를 할 때도 DRB를 받아야 하는지? - 25.연구자가 본인이 속한 의료기관 원내에서 익명정보를 이용하여 연구할 때도 DBR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? - 26.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하는지?	66 ~ 67
기타	<신설 및 보완>	 ○ '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' 및 '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' 개정사항 반영 - 가명처리 절차 변경 반영 -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 변경 반영 ○ 가이드라인 목차 구성 및 용어 등 수정보완 등 	